

5급 이하 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제15조 관련)

1. 공무원 경력

경	력	환 산 율
가. 갑경력 (1) 동일직렬의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2)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자가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 그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동일계급 이상의 행정직렬과 감사직렬 상호간의 경력 (4)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렬이 분리·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되기 전의 원직렬 또는 통합되기 전의 폐합되는 직렬에서 근무한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5) 시보공무원이 될 자(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받은 교육훈련기간, 실무수습기간 (6)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라 사법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 (7) 직종개편에 따라 전직한 경우 전직 전의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경력		100퍼센트
나. 을경력 (1) 가목 (3) 및 (4)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직군의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2)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외교직 또는 외무행정직공무원의 경력 (3) 특정직위에 보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별정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복수직으로 되어 있거나 기구개편·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직위에 보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되거나 일반직공무원과 복수직으로 된 경우 해당 별정직공무원(직무내용이 동일한 상위계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직무내용의 변경없이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의 경력 (4)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군이 분리·신설 또는 통합되거나 소속직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분리·통합되기 전 또는 변경 전의 원직군에서 근무한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5) 채용후보자명부 등재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된 자를 제외한다)		80퍼센트
다. 병경력 (1) 직군이 다른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같은 종류의 공무원으로서 직군이 다른 경우에 한함) (2)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특정직공무원의 경력(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기능직공무원, 관리운영직군의 경력 (4)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기타 법률에 의한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된 자를 제외한다) (5) 동일직군의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6) 임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직군이 분리·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통합되기 전의 원직군에서 근무한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7) 가목(6) 및 나목 (2)의 경우를 제외한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별정직 공무원, 전담직위 및 전문경력관의 경력(별정직 공무원, 전담직위, 전문경력관 경력이 있는 자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승진연수의 1/2 범위 내 50퍼센트, 재임용 전 과거 10년의 기간에 한함) (8)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기존 계약직공무원의 경력, 임기제일반직 경력(계약직 공무원, 임기제일반직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승진연수의 1/2 범위 내 50퍼센트, 재임용 전 과거 10년의 기간에 한함) (9)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 신설직렬, 관리운영직군으로 전환된 경우 바로 하위 계급의 기능직공무원 경력		60퍼센트
라. 정경력 (1) 직군이 다른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같은 종류의 공무원으로서 직군이 다른 경우에 한함)		30퍼센트

2. 기타 경력

경	력	환 산 율
가. 박사학위소지경력 사무총장이 정하는 해당 직급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5급 공무원 : 80퍼센트

후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서 해당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 및 교육·연구기관(석사급이상의 정규연구직원이 10인 이상인 기관에 한한다) 또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정규 연구직원으로 해당 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함)	6급 이하 공무원 : 100퍼센트
나. 자격증소지경력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무총장이 정하는 해당 직급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력(동일분야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한함)	해당 직급의 바로 상위직급의 경력경쟁채용 등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력 : 100퍼센트 해당 직급의 경력경쟁 채용등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력 : 80퍼센트
다. 공공기관·민간기업등 근무경력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 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 이상의 경력	60퍼센트

비고 : 1. "경력경쟁채용등"이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통한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이 표의 공무원 경력에는 그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
3. 제2호 각 목의 경력은 최초로 임용된 계급에 재직하는 동안에 한하여 평정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평정하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평정한다.
4. 제2호 가목 중 대학은 외국의 대학을 포함하며, 교육·연구기관은 외국의 해당기관을 포함한다.